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보행 123-164	(전화번호 22-9221)	전 결 규정 2 조 2 항 22 전 결 사항
처리기간	1978.5	시 장	
시행일자		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 text-align: center;">결재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width: 80px; height: 80px; margin: 10px auto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8.5.27</div>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0.8em; text-align: center;">보건행정과장</div>	
보존년한			
보조기관	보건행정과장 전결 보건행정과장		
기안책임자	이종진 1978.5 (김희섭)	조	
경유 수신 참조	성등구청장 위생과장	발신 신	시 장
제목	결의 회시		
<p>1. 위생 1236-539 (가.5.1)호 가 관련임.</p> <p>2. 위진 다음과 같이 회시하니 양위에 참고할 것</p> <p>" 도시 계획 용도지역을 구분한 것이 주거지역 이고 도시 계획 시설은 시장용지로서 지역과 시설은 별개의 사항으로서 시장용지로 되었다고 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같은 사항으로 보아 동일 취급 할 수 없는 것임 "</p>			
정서			
발인			
발송			
113			

서울특별시

도개 4.5-566 (36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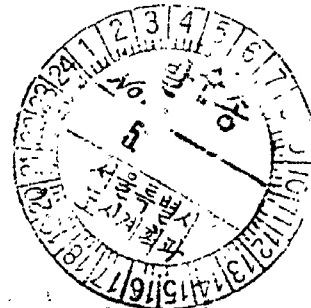
'78. 5. 19.

수신 보건행정과장

제목 업무에 따른 질의 회시

1. 보행 1436-350 ('78. 5. 16) 관련입니다.

2. 위호 관련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구분한 것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용지로서 지역과 시설은 별개의 사항이며 시장용지로 되었다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동일 취급할 수 없는 것인지 이유면제를 제조업이 시장용지내에 설치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항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과의 소관으로 당과에서 처리 판단할수 없는 사항을 회시합니다. 끝.



Handwritten signature and date: 1978. 5. 20

도시계획과장

